

제299회 임시회  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 
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2150호)



2021. 2. 25.

서울특별시의회  
이광성 의원(더불어민주당, 강서5)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 광 성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폐기물배출자, 재활용사업자 등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음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.  
또한,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,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등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고,  
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마지막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